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769
------	-----

2009. 02. 11
재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2월 2일, 오신환 의원 외 11인
- 나. 회부일자 : 2009년 2월 4일
- 다.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09년 2월 13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가. 제안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4조에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성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제5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내용의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표로 규정하고 있어 이 두 조문이 상치되고 있으며,
- 현행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에 명시된 민간위탁 사무는 5건인데 반해, 현재 실제로 민간위탁 되고 있는 총 사무는 177건(사무26건, 시설 151개소)에 이르고 있어 이 중 일부 업무는 관련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제5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유형을 기능별로 규정함으로써 그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 있음.

나. 주요골자

- 제명을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한다.
- 제5조에서 민간위탁 사무내용을 기능별로 유형을 규정하고 기존의 별표를 삭제한다 (안 제5조 보완 및 별표 삭제).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타사항 :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령)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에 명시된 5건의 민간위탁 사무를 삭제하고, 별표에 명시되지 않으나, 실제 민간위탁 되고 있는 사무 177건(사무 27건, 시설 151개소)에 대해 9개의 기능별로 유형을 정하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가. 민간에 위탁할 사무를 기능별로 명시한 사항(안 제5조)

- 민간에 위탁할 사무내용을 아래 [표1]과 같이 기능별로 민간위탁 사무를 규정하여, 실제 민간에 위탁되고 있는 177건의 사무내용을 모두 포괄하여 보다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음 페이지에 계속)

[표1] 민간위탁 사무내용

-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청소, 경비, 시설관리, 매점 및 부설 주차장 운영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나. 안 제5조와 관련된 “별표”를 삭제하려는 사항

- 안 제5조와 관련된 “별표”를 삭제할 경우, ‘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과 ‘삼척각 관리운영’ 2개의 사무는 현재 해당관련 조례가 없으므로, 향후 해당 상임위원회의 조례를 제정 운영할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별표]

위탁사무		
주관국(과)	사무명	비고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보호담당관)	○ 시청 어린이집 관리운영	
건설기획국 (한강시민공원사업소)	○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 관리운영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배급수관 시공감독	
	○ 상수도공사 포장도로 굴착 복구 시공감독	
문화국(문화과)	○ 삼척각 관리운영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다음 페이지에 계속)